# 2026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부정행위 예방 및 유의사항 안내

2026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의 공정한 시행 및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모든 학생은 시험 응시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1. 시험 중 주요 금지 행위**

가. 타인의 답안을 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

나. 시험 중 허가되지 않은 교재, 노트, 메모 등 참고자료를 열람하는 행위

다. 답안지를 상호 교환하거나 다른 학생과 답안을 의논하는 행위

라. 대리시험에 응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청탁하는 행위

마. 스마트안경, 스마트워치, 무선이어폰,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시험 관련 정보를 검색·촬영·녹음·송수신하는 행위

바. 생성형 AI 등 외부 서비스를 허가 없이 활용하여 답안을 검색하거나 생성하는 행위

사. 시험 감독 교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항거하는 행위

**2. 시험 응시 시 준수사항**

가.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, 스마트워치, 무선이어폰, 초소형 카메라 등 시험에 필요하지 않은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 등에 보관하여야 합니다.

나. 스마트안경, 스마트워치 등 촬영·녹음·통신 기능이 있는 착용형 기기의 시험 중 사용을 금지하며, 해당 기기를 착용한 경우 시험 시작 전 감독 교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다. 시험 중 허가되지 않은 자료 열람, 다른 학생과의 답안 공유 및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.

라. 시험 감독 교원이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전자기기 사용 중단 및 보관 등을 지시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.

마. 시험 감독 교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항거하는 행위는 「학생상벌 규정」 제5조에 따른 유기정학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
**3. 부정행위 적발 시 조치사항**

가. 답안지 무효 처리

「학사에 관한 규정」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의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합니다.

1) 교재·노트·메모·타인의 답안지·기타 참고물을 도시하여 답안지 작성을 시도한 자

2) 답안지를 상호 교환하거나 의논한 자

3) 학생처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에 회부된 자

나. 징계 조치

「학생상벌 규정」 제5조에 따라 시험(원격수업에 따른 평가 포함) 중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징계 대상이 됩니다.

**학생상벌 규정 제5조 (징계의 대상)**

9. 시험(원격수업에 따른 평가 포함) 중 부정행위를 한 자
   가. 경고 : 타인의 답안작성을 돕는 자
   나. 근신 : 교재, 노트, 메모, 타인의 답안지 및 기타 참고물 등을 도시하여 답안지 작성을 시도한 자
   다. 유기정학
      1) 답안지를 상호 교환하거나 의논한 자
      2) 외부에서 답안지를 투입한 자
      3) 대리시험에 응한 자 및 이를 청탁한 자
      4) 감독지시에 불응하거나 항거한 자
   라. 무기정학
      1) 과거에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자가 시험부정행위로 적발된 자
      2) 기타 학생상벌규정에 의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로 의결된 자

**4. 기타 유의사항**

가. 스마트안경 등 정보통신기기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.

나. 부정행위 적발 시「학사에 관한 규정」제23조 및「학생상벌 규정」에 따라 답안지 무효 처리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
다. 시험 감독 교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항거하는 행위 역시 유기정학 징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학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**상명대학교 교무처 학사운영팀**